영등포구의회
제15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10. 9. 7.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10. 8. 19.
- 제 안 자 : 영등포구청장

개정(제안) 이유

-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과 조문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정확한 법규운용과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

주요골자

- 안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개정
- 안 제3조(기금의 재원) 제1호 중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을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으로 개정

- 안 제8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3항 중 “부구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같은항 제1호, 제2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2.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 기획홍보과장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
  - 안 제1조·제3조·제5조·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수익금의 사용)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

- 해당 없음.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경륜·경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아울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 안 제3조 중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을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으로 개정하였고,

○ 안 제8조제3항에서는 회의 운영시 효율성을 높이고 실무중심의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 직위 “부구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위원회 구성 중 구의회 추천 구의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 9. 7.

보 고 자 : 이 남 식

【참고자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5.6, 2009.11.20>

1.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가.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100분의 60
   나.「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出捐)에 100분의 10
   다.「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0
   라.「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5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0
   나.「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30
   다.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에 100분의 10
   라.「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5

②경주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수익금을 제1항에 따른 사용에 우선하여 전년도의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할 수 있다.